

대한호신협회 상벌 및 징계 규정



대 한 호 신 협 회

대한호신협회 상벌 및 징계 규정

제정 2026년 1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호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 및 산하 단체(지부)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협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명예를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회원, 임원, 지도자, 지부 및 위원회에 대한 상벌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윤리위원회)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포상

제4조(포상 대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1. 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2. 지도상 :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거나 호신술 보급에 앞장선 지도자
3. 최우수/우수 지부상 : 당해 연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부

4. 표창장 : 각종 대회 입상자 또는 모범적인 회원

5. 감사패 : 본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외부 인사 또는 단체

제6조(포상 절차)

①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시도 지부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대상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포상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제7조(포상 혜택)

포상 수상자에게는 승단 심사 추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8조(징계 대상)

본회의 회원, 지도자, 임원, 단체(지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사유)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직무 태만 또는 회계 부정(횡령, 배임)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대 악)
5.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지부의 의무(회비 납부, 보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 조치 (경미한 사안)

- 2. 근신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반성문 제출 및 공식 활동 제한
- 3. 자격정지 : 6개월 이상 5년 이하,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의 모든 권리(지도, 심사, 투표 등) 정지
- 4. 해임 : 임원의 경우 직위를 박탈 (단, 회원 자격은 유지 가능)
- 5. 제명(자격취소) : 회원 및 지도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며, 재가입을 불허함

제4장 징계 심의 절차

제11조(징계 혐의의 인지 및 조사)

- ① 위원회는 제보, 진정,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징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 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출석 요구 및 소명)

- ①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혐의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석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및 의결)

- ① 징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 기간, 효력 발생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제척 및 회피)

징계 혐의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재심 및 감경

제15조(결과 통보 및 재심 청구)

- ① 위원회는 징계 결정 후 7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에게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②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 결정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제16조(징계의 감경 및 사면 제한)

- ① 포상 실적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단, 성폭력, 폭력, 횡령·배임, 승부조작 등 중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사면할 수 없다. (무관용 원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